## 이용약관 변경사항 신구대비표

## 혖 했 벼 경 안 제7조 (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 제7조 (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유보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)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) ①~⑤ (생략) ①~⑤ (현행과 동일) ⑥ 제③항에 따라, 회원을 중구민과 비 ⑥ 제3항에 따라, 회원을 중구민과 비 중구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, 중구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, '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대면자격 '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대면자격 확인서비스'를 활용한 중구민 인증을 확인서비스'를 활용한 중구민 인증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실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 해 중구민 등급 확인받거나, 외국국적자 중 국내영 주권자로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 을 부여받는다. 이외 회원은 비중구 민 등급으로 간주된다. 하고 체류지를 서울특별시 중구로 등록한 자로, 영주증, 외국인사실 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보건소(보건 지소과)에 제시하여, 그러한 사실 이 증명된 경우에 한 해 해당 시점 부터 중구민 등급을 부여받는다. 이외 회원은 비중구민 등급으로 간주되며, 중구민회원 등급 자격 확인은 최초 인증 이후에도 필요시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.